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53

발의연월일: 2021. 1. 29.

발 의 자:송재호·강민정·김민기

김영배 · 김홍걸 · 김회재

남인순 • 백혜련 • 양정숙

오영훈 · 이원택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(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·호미·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, 해조류,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어업)과 맨손어업(손으로 낫·호미·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· 채취하는 어업)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, 어구 또는 시설마다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실효성이 없음. 이로 인하여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 초래와 신고수리 후 조업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해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(안 제4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 중 "하려면 어선·어구 또는 시설마다"를 "하려는 자는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신고어업) ① 제8조ㆍ제41	제47조(신고어업) ①
조ㆍ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	
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<u>하려</u>	<u>하려는</u>
면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	<u>자는</u>
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해양	
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신고하여야 한다.	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